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1129(본소), 2021나21136(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1129(본소), 2021나21136(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가합201341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한솔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

변론 종결2022. 4. 6.

판결 선고2022. 5. 11.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가합201341(본소), 2020가합201358(반소)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본소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37,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2022.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91,450,695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① D 계좌로 송금한 대여금 63,188,000원, 제1심에서 대여주장이 배척된 송금액 19,970,000원(제1심 대여주장액 708,474,990원 - 제1심 대여인정액 688,504,990원)을 청구범위에서 제외하였고, ② 주식회사 F 계좌로 추가 송금한 103,531,537원, 피고를 위한 카드결제액 69,138,000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를 추가하고, ③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금액을 35,452,000원(= 제1심에서 변제를 자인한 금액 641,984,832원 - 당심에서 변제를 자인한 금액 606,532,832원)만큼 감축하고 그만큼 대여금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본소 청구를 감축 및 확장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49,240,8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2011년경 C에서 피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축원이나 불공을 올린 신도이다.

나. 원고는 2011. 3. 3.부터 2018. 8. 3.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 C 명의 계좌, 피고의 딸 D 명의 계좌, 피고의 아들 E 명의 계좌, 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 계좌(이하 통틀어 '피고측 계좌'라 한다)로 수시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2. 10. 31.부터 2018. 9. 18.까지 피고측 계좌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수시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5.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변제일 2014. 10. 15.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2013. 일자불상경 6,000만 원을 이자 1.5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갑 제3호증의 1, 2).

라.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F 명의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건물(대구 남구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제1매매'라 한다), 2014. 5.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5. 30.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U조합,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위 U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제1매매 이전에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F, 근저당권자 V조합,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으로 된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6. 2. 말소되었다(을 제23호증의 1, 2).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부동산을 F 명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건물(대구 남구 I 토지 및

그 지상 T호 주택,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로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2014. 4. 16. 원고에게 제2부동산을 1억 8,5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제2매매'라 한다), 2014. 5.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4. 5. 2. 제2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W조합,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W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위 매매계약 이전에 제2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D, 근저당권자 U조합, 채권최고액 7,800만 원으로 된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6,000만 원)를 변제하였고,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5. 2. 말소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4. 10. 8. 제1부동산의 신규매수인으로 J를 원고에게 소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12. 1. J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을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1, 2, 3), J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6,500만 원(= 2014. 9. 30. 500만 원 + 2014. 10. 8. 2,500만 원 + 2014. 10. 25.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5. 4. 3. 원고에게 F 명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및 건물(대구 남구 K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제3매매'라 한다), 2015. 4.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4. 2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제3매매 이전에 제3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F, 근저당권자 W조합,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12 내지 16,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

원고는 피고측 계좌로 782,731,537원[= 1심이 대여로 인정한 송금액 679,200,000원 + F 계좌로 송금한 당심 추가대여 주장액 103,531,537원(= 2014. 4. 1.자 600만 원 + 2014. 5. 30.자 37,531,537원 + 2014. 11. 25.자 6,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싱크대 공사비용 800만 원 및 병원비 1,304,990원을 대신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신용카드를 C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69,138,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원고가 D 계좌로 초과 송금한 대여금 잔액 63,188,000원(= 송금액 145,050,000원 - 81,862,000원)은 이 사건 청구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총 797,986,527원(= 송금 관련 대여액 782,731,537원 + 싱크대 공사비용 및 병원비 대납 관련 대여액 9,304,990원 + 신용카드 결제 관련 대여 69,138,000원 - D 계좌 송금 관련 대여금 잔액 63,188,000원)이 된다.

반면 피고는 원고 측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413,535,832원[= 제1심이 변제로 인정한 송금액 445,173,832원 - 변제와 무관한 송금액 7,862,000원(= X 계좌 입금 952,000원 + Y 계좌 입금 6,910,000원) - 이자 총당 송금액 23,776,000원], 제1, 2, 3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상계·공제하는 방식으로 1억 9,300만 원(= 제1부동산 6,500만 원 + 제2부동산 5,500만 원 + 제3부동산 7,300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 606,535,832원(= 송금 방식 413,535,832원 + 제1, 2, 3부동산 매매대금 상계·공제 1억 9,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91,450,695원(= 797,986,527원 - 606,535,83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송금액 중 일부, 카드 결제대금, 싱크대 공사비용은 대여금이 아니라 불공비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고, 특히 2014. 5. 30.자 송금액 37,531,537원은 제1매매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원고가 승계할 대출금에 포함하되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대여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3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상계·공제하는 방식으로 합계 342,936,931원[= 제1부동산 104,936,931원(= 제1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 대출금채무 승계 132,468,468원 - 원고가 추가 대출받아 송금한 37,531,537원) + 제2부동산 1억 2,500만 원(= 제2매매대금 1억 8,500만 원 - 대출금채무 승계 6,000만 원) + 제3부동산 1억 1,300만 원(= 제3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합계 2억 6,300만 원 - 대출금채무 승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제1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여 변제한 금원으로 인정한 445,173,832원(678,173,832원 - 제1, 2, 3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변제인정액 2억 3,300만 원)에 더하여 D 또는 F이 250만 원(= 2013. 7. 1.자 50만

원 + 2014. 10. 1.자 20만 원 + 2017. 2. 10.자 180만 원), 주식회사 L[이하 '주L'이라 한다]이 2,12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이를 추가로 변제하였는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149,240,832원을 초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대여금액

1) 송금 관련 대여금액 (= 745,20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2012. 6. 5.부터 2018. 8. 3.까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661,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용증거, 당심의 Z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420만 원(제1심 인정금액 1,820만 원 + 당심 추가인정금액 6,600만 원)을 피고측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측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금액은 합계 745,200,000원(= 661,000,000원 + 84,200,000원)이다.

① 아래 표 2 기재 금액은 지급금액, 시기, 방법 등이 피고가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금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아래 표 1, 2 기재 대여금액 이외에도 2011. 5. 19. 130만 원, 2012. 3. 27. 170만 원 등 1회당 100만 원 내외로 합계 1,998만 원을 피고측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2. 4.부터 2018. 6. 20.까지 C에게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합계 5,840만 원 상당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원고가 굿비용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바, 이러한 지급금액만 해도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불공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보이는 이상 아래 표 2 기재 송금

금액은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1] 대여사실에 다툼이 없는 송금액

120605	5,000,000	C	160409	5,000,000	피고
120608	10,000,000	C	160516	1,500,000	피고
130411	10,000,000	C	160527	3,000,000	피고
130515	40,000,000	C	161031	9,000,000	피고
130613	2,000,000	D	161108	40,000,000	피고
130701	100,000,000	C	161124	5,000,000	피고
130702	10,000,000	C	161130	5,000,000	피고
130725	38,000,000	D	170208	1,800,000	D
130828	200,000	E	170406	2,500,000	C
130930	500,000	E	170422	3,500,000	C
131007	6,800,000	D	170515	5,000,000	C
131016	45,000,000	E	170703	2,200,000	D
131113	5,000,000	F	170816	4,000,000	피고
131114	15,000,000	F	170831	9,000,000	피고
131123	1,350,000	D	170925	7,000,000	피고
131202	37,000,000	F, E	170930	1,700,000	피고
131214	10,000,000	F	171212	6,100,000	피고
140322	1,000,000	F	171228	1,000,000	피고
140327	3,000,000	F	171230	1,000,000	피고
140405	7,800,000	피고	180115	4,000,000	피고
140424	2,000,000	피고	180220	2,900,000	피고
140717	5,000,000	피고	180315	1,000,000	피고
140722	5,000,000	D	180327	5,000,000	피고
140724	7,000,000	D	180402	1,000,000	피고
140730	13,400,000	피고	180406	7,000,000	피고
141013	20,000,000	피고	180420	5,000,000	피고
141030	26,000,000	D, F	180514	3,500,000	피고
141031	4,000,000	F	180524	600,000	피고
141113	650,000	E	180531	1,700,000	C
141124	1,800,000	피고	180615	8,500,000	피고
141222	40,000,000	D	180620	1,500,000	피고

120605	5,000,000	C	160409	5,000,000	피고
141223	20,000,000	D	180702	4,500,000	피고
150723	5,000,000	피고	180803	2,000,000	피고
160114	2,000,000	피고			
합계 661,000,000원					

[표 2] 대여로 인정하는 송금액(음영 부분은 당심 추가인정액)

130514	5,000,000	C	160211	2,500,000	C
	140401	6,000,000	F	160212	4,000,000
	141125	60,000,000	F	160214	2,200,000
160204	2,500,000	C	180430	2,000,000	피고
합계 84,200,000원					

2) 대납 방식의 대여금액 (= 9,304,990원) 갑 제10, 11, 12, 16, 1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N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납부할 싱크대 설치비용 및 병원진료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9,304,99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되고, 을 제11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피고는 2014. 8. 29.부터 2014. 9. 30.까지 N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2014. 9. 30. 그 진료비 1,304,99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② 위 대납된 진료비의 액수가 적지 않은 데다가 원고가 피고의 진료비를 대신 부담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위 진료비 상당의 차용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싱크대설치를 위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O(현재 상호: P)에서 2013. 11. 13. 180만 원, 2014. 1. 9. 220만 원, 2014. 2. 4. 260만 원을, Q에서 2014. 10. 7. 140만 원을 각 결제하였다(갑 제16호증의 1).

④ 통상적으로 주택은 싱크대가 설치된 상태로 매매·거래되는 것이 보통이고 주택매수인인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싱크대를 직접 설치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⑤ 위 O 직원 R과, 위 Q의 직원 S은 F을 위하여 원고가 위 금액을 대신 결제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1, 12호증)를 작성하였다(을 제11호증은 원고가 위 R, S에게 위 각 금액을 써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의 결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갑 제11, 12호증의 기재를 믿을 수 있다).

3)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대여 여부(배척) 원고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C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69,138,000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2014. 2. 4.부터 2018. 6. 20.까지 C에서 5,84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C의 신도로서 2011년 이래 정기적으로 곳을 지내고 불공을 드리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4. 5. 30.자 F 계좌 송금액의 대여 여부(배척) 원고는 2014. 5. 30. F 계좌로 37,531,537원을 이체하여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4호증, 제19호증의 2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일시경 F 계좌로 해당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①, ②, ③ 기재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37,531,537원은 제1매매에 따라 원고가 2014. 5. 30. 그 앞으로 제1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여기에 소외 U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받은 대출금으로 기존에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F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 '위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교환하여, 제1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보유한 상태에서 J에게 매도하였으며, 그에 따라 J는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하고 매매대금 잔액인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위 6,500만 원은 변제에 충당되었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그 거래내역 및 경위, 중개인의

진술(을 제3호증의 2)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제1매매 이후에도 제1부동산을 실질적으로 피고가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J에게 매도하게 하였으며,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와 J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J로부터 수령한 매매잔금을 피고의 변제액으로 보는 이상 위

37,531,537원은 제1매매 및 제1, 2 부동산의 교환 과정에서 제1매매대금의 일부로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을 피고가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대여로 평가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제1심에서 위 37,531,537원에 관한 대여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가 그 거래내역이 기재된 증거(을 제14호증, 을 제19호증의 28)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위 37,531,537원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 채무에 포함되어 제1부동산 관련 피고의 변제금액에서 공제되는 이상 별도로 계산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위 37,531,537원의 대여 경위에 관하여, 이를 J로부터 수령한 돈 중 일부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당심 2021. 10. 5.자 준비서면 제4쪽), 원고가 J로부터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시점은 2014. 9. 30. 이후여서 위 37,531,537원의 송금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이후이므로, 그 대여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믿기도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은 총 754,504,990원(= 송금 관련 대여금액 745,200,000원 + 대납 관련 대여금액 9,304,990원)이다.

다. 피고의 변제금액

1) 송금 관련 변제금액 (= 472,173,832원) 가) 인정 부분

원고가 2012. 10. 31.부터 2018. 9. 18.까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함께 417,184,832원(제1심 다툼없는 변제액 650,184,832원 - 제1, 2, 3부동산 관련 변제액 2억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대여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당심에서 2013. 7. 1.부터 2015. 7. 23.까지 매월 26일 내지 28일 사이에 입금된 100만 원 상당 금원 합계 23,766,000원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어서 대여 원금 변제액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여, 위 돈이 대여 원금에 충당되었다는 1심 자백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보이나, 위 금원의 객관적 송금내역이 존재하고 원고의 송금액 전반에 걸쳐 달리 이자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착오에 의하여 진실에 반하는 자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인용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6, 19, 20,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Z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 당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아래 표 4 기재 금액 합계 54,989,000원을 원고 측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수시로 피고측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하고 피고측 계좌로부터 변제금을 송금받아 왔다. 피고측 계좌의 명의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원고 또는 원고의 친족 등에게 금원을 송금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아래 표 4 기재 송금액은 모두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갑 제21, 22호증의 기재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X 계좌로 지급된 돈이 보일러 설치대금이라거나, 피고가 Y 계좌를 빌려 위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2013. 4. 25.부터 2013. 6. 28.까지 사이에 (주)L로부터 합계 2,120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아래 ㉠, ㉡, ㉢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송금액은 위 차용금의 변제액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4. 11. 1,000만 원, 2013. 5. 14. 500만 원, 2013. 5. 15. 4,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C 계좌로 송금받은 뒤, M의 계좌로 2013. 4. 12. 1,000만 원, 2013. 5. 15.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M 또는 (주)L은 피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 M은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주)L에게 빌려주었고, (주)L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또는 원고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며, 원고를 잘 알지 못하고 원고와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주)L이 원고에게 위 2,12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원고와 (주)L 사이에 다른 거래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 2,120만 원은 M 또는 (주)L이 피고로부터 송금받아 차용한 금원 범위 내에 있다.

㉢ 원고의 계좌에서 2013. 3. 27. 500만 원, 2013. 3. 28.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이 M 계좌로 이체된 사실,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M의 관계 및 다른 거래내역, 원고와 M 사이의 거래원인 존부를 밝힐 것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2021. 9. 1.자 준비서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2021. 10. 5.자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주)L이 원고에 대한 위 6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직접 부담하고 그 변제를 위하여 위 2,12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주장은, 2013. 7. 1.부터 2015. 7. 23.까지 매월 26일 내지 28일 사이에 입금된 100만 원 상당의 합계 23,766,000원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어서 대여원금 변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 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417,184,832원을 송금받아 대여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자인한 바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자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이자 약정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비록 2013. 일자불상경 작성된 차용증(갑 제3호증의 2)에는 '이자 1.5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차용증상 대여금 6,000만 원은 원고가 2013년경 그 원금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에 의하여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자 변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표 3] 변제사실에 다툼이 없는 송금액

121031	10,000,000	피고	160201	700,000	피고
121229	500,000	피고	160226	2,440,000	피고
130131	500,000	D	160307	700,000	피고
130228	500,000	C	160328	2,690,000	피고
130328	500,000	피고	160411	700,000	피고
130430	500,000	피고	160421	700,000	피고
130527	10,100,000	C	160425	2,500,000	피고
130531	500,000	피고	160502	1,000,000	C
130617	32,100,000	C	160520	4,530,000	피고
130701	500,000	C	160602	780,000	피고
130715	3,100,000	D	160620	960,000	피고
130729	170,000	C	160627	2,550,000	피고
130801	6,500,000	D	160705	700,000	피고
130805	1,340,000	D	160715	50,400,000	피고
130812	3,000,000	C	160721	4,120,000	피고
130930	2,000,000	피고	160726	2,030,000	피고
131003	1,500,000	D	160805	5,000,000	피고
131018	1,530,000	E	160826	2,000,000	피고

121031	10,000,000	피고	160201	700,000	피고
131029	3,000,000	E	160907	3,620,000	피고
131101	1,250,000	F	160926	1,990,000	피고
131126	1,500,000	D	161019	5,700,000	피고
131128	900,000	D	161026	1,400,000	피고
131226	1,000,000	D	161207	700,000	피고
131226	300,000	피고	161226	3,150,000	피고
131231	2,000,000	D	170124	3,000,000	D
140211	5,000,000	피고	170223	500,000	D
140226	2,353,000	피고	170227	650,000	피고
140311	750,000	피고	170228	900,000	피고
140326	1,800,000	피고	170315	700,000	피고
140401	3,000,000	피고	170327	2,640,000	피고
140428	1,320,000	F	170410	700,000	피고
140503	1,500,000	피고	170426	2,000,000	피고
140511	2,170,000	피고	170427	420,000	D
140526	1,900,000	D	170510	700,000	피고
140611	1,350,000	F	170525	1,500,000	피고
140615	1,600,000	피고	170526	1,250,000	D
140626	4,308,000	F	170602	400,000	피고
140702	740,000	F	170613	1,000,000	피고
140731	750,000	피고	170626	620,000	피고
140920	4,140,000	D	170628	700,000	피고
140926	2,081,000	피고	170707	2,220,000	D
141011	150,000	피고	170710	3,890,000	피고
141011	200,000	F	170717	700,000	피고
141104	640,000	F	170801	1,800,000	피고
141127	2,186,000	F	170807	900,000	피고
141224	35,050,000	피고	170823	4,020,000	피고
141226	2,600,000	피고, D	170828	1,000,000	피고
141229	900,000	피고	170830	1,000,000	피고
150102	700,000	피고	170910	700,000	피고
150126	2,177,000	피고	171010	430,000	피고
150128	2,200,000	피고	171026	2,200,000	피고

121031	10,000,000	피고	160201	700,000	피고
150131	2,200,000	피고	171106	4,000,000	D
150212	800,000	피고	171113	700,000	D
150227	4,612,000	D	171127	1,340,000	D
150324	300,000	피고	171222	1,600,000	C
150326	2,200,000	D	180119	4,930,000	피고
150326	280,000	피고	180124	1,600,000	피고
150331	490,000	피고	180126	300,000	C
150401	700,000	피고	180130	3,865,000	C
150427	1,480,000	D	180208	700,000	피고
150427	1,500,000	피고	180226	1,600,000	피고
150511	1,200,000	피고	180307	100,000	피고
150515	600,000	D	180316	550,000	피고
150522	300,000	D	180319	1,000,000	피고
150526	2,200,000	피고	180320	250,000	피고
150602	700,000	피고	180326	1,600,000	피고
150608	400,000	D	180404	1,050,000	피고
150626	2,930,000	피고	180414	700,000	D
150701	700,000	피고	180414	6,300,000	피고
150716	15,000,000	E	180418	450,000	피고
150727	570,000	D	180427	1,865,000	피고
150731	2,150,000	피고	180528	2,440,000	피고
150819	5,700,000	피고	180529	960,000	피고
150826	2,480,000	피고	180618	330,000	C
150904	700,000	피고	180627	4,760,000	피고
150930	2,330,000	피고	180702	1,350,000	피고
151014	700,000	피고	180712	127,000	피고
151026	2,340,000	피고	180726	655,000	피고
151126	1,990,000	피고	180728	550,000	피고
151218	570,000	피고	180817	194,500	피고
151228	2,300,000	피고	180827	640,000	피고
160106	700,000	피고	180917	1,000,000	피고
160115	2,000,000	피고	180918	651,332	피고
160126	1,950,000	피고			

121031	10,000,000	피고	160201	700,000	피고
합계 417,184,832원					

[표 4] 변제로 인정하는 송금액(음영 부분은 당심 추가인정액)

120704	1,700,000	피고	AA(AB은행)	을 13
130204	100,000	D	원고(Z은행)	원고 계좌의 거래기록사항에는 'AC' 또는 'AD'로 표기
130304	100,000	D	원고(Z은행)	
130405	100,000	D	원고(Z은행)	
	130425	400,000	(주)L	원고
130503	1,000,000	D	원고(Z은행)	갑 4-1, 2, 을 12, 을 19-1
	130525	400,000	(주)L	원고
130610	1,000,000	D	원고(Z은행)	갑 4-1, 2, 을 12, 을 19-1
	130626	400,000	(주)L	원고
	130628	20,000,000	(주)L	원고
130704	1,000,000	D	원고(Z은행)	갑 4-1, 2, 을 12, 을 19-1
140127	1,140,000	피고	원고(AB은행)	을 19-21
140128	60,000	피고	원고(AB은행)	을 19-21
140530	2,000,000	F	Y	을 19-28
140602	1,000,000	F	AA	을 19-29
140828	3,500,000	F	Y	을 19-33
140901	3,000,000	F	X	을 19-34
140901	780,000	F	Y	을 19-35
140930	722,000	F	AA	을 19-37
141001	50,000	F	원고(Z은행)	갑 4-3, 을 13, 을 19-37
141211	3,000,000	F	AE	을 19-41
150323	300,000	피고	원고	을 19-47
150719	5,000,000	D	AA	을 13, 19-56, 제1심 인정액(100만원)이 아닌, 실제 송금액 500만 원을 변제액으로 인정함
151030	1,000,000	D	원고	을 19-61
160313	80,000	피고	원고	을 19-68
160414	80,000	피고	원고	을 19-70
161128	1,960,000	피고	원고	을 19-81
	170210	1,800,000	피고	원고

120704	1,700,000	피고	AA(AB은행)	을 13
180309	70,000	피고	원고	을 19-101
180318	50,000	C	원고	을 19-101
180327	50,000	피고	원고	을 19-102
180405	27,000	피고	원고	을 19-102
180407	30,000	피고	원고	을 19-104
180619	50,000	피고	원고	을 19-108
180515	2,000,000	피고	X	을 15
180717	1,040,000	피고	X	을 15
합계	54,989,000			

나) 배척부분

피고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금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①, ② 기재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한 금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추가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3. 7. 1. C 계좌에서 원고의 Z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피고의 2013. 7. 1.자 변제금액으로 산정된 50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보이고, 피고가 해당 일자에 위 금액을 추가로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Z은행계좌에 2013. 7. 1. 19:41:59 50만 원이 입금되고 그 거래내역에 'C'이라는 기재가 있으나(갑 제4호증의 2, 제4면), 이는 D 명의의 계좌에서 2013. 7. 1. 19:41:59 인출되어 원고 계좌로 송금된 금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인다(2021. 4. 23.자 금융거래정보회신 제5면)].

② 피고는 2014. 10. 1. C 계좌에서 원고의 Z은행계좌로 2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송금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다[F 계좌에서 원고의 Z은행계좌로 2014. 10. 1. 5만 원, 2014. 10. 11. 2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는데(갑 제5호증의 3, 을 제19호증의 38, 2021. 4. 23.자 Z은행의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 제57면), 위 각 이체금액은 앞서 변제액으로 포함하였다].

2) 제1, 2, 3부동산 관련 변제금액 (= 285,468,463원) 가) 제1부동산 관련 변제금액 (= 77,468,463원)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F 명의 제1부동산을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당시 기존 대출금채무 1억 3,000만 원에 더하여 대환대출 시 5,000만 원을 원고가 추가로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총 1억 8,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기존 대출금채무 1억 3,000만 원은 변제하였으나 추가 대출금 5,000만 원 중 일부인 37,531,537원만 송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승계한 대출금채무는 167,531,537원(= 1억 3,000만 원 + 37,531,537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1매매 관련 실제 매매잔금으로서 원고의 대여금 변제에 총당된 금액은 104,936,931원(= 2억 7,000만 원 - 167,531,537원)이다.

(2) 판단

위 인용증거,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제1부동산 관련 원고의 대여금 변제에 총당된 금액은 원고가 J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인 6,500만 원 및 원고가 제1매매로 이전받은 제1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남은 5,000만원 중 피고에게 송금하지 않은 12,468,463원(= 5,000만 원 - 37,531,537원)을 합산한 77,468,463원(= 65,000,000원 + 12,468,463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변제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 'J'는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무액을 승계하고 매매대금 잔액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위 6,500만 원이 피고의 변제금액이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그 거래내역 및 경위, 중개인의 진술(을 제3호증의 2)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제1매매 무렵 제2매매(2015. 4. 16.) 및 그에 따른 제2부동산의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2014. 5. 2.)도 함께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앞으로 제1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마친 2014. 5. 30.경 제1매매대금(2억 7,000만 원)과 원고의 신규 대출금액(1억 8,000만 원)의 차액 9,000만 원을 대여금 변제에 총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미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제1부동산을 J에게 매도한 후 제1부동산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부채무 1억 8,000만 원을 J에게 인수시키고 J로부터 매매잔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제1매매

과정에서 위 6,500만 원 외에 근저당권부 채무 1억 8,000만 원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인데, 그 이익에서 제1매매 이전 설정되어 있던 선행 근저당권말소에 소요된 1억 3,000만 원과 원고가 2014. 5. 30. 피고에게 지급한 37,531,537원을 제외한 12,468,463원은 제1, 2부동산의 교환에 따라 당초 피고측에 귀속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원고가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피고의 대여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2014. 10. 12.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5,050만 원을 변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금원 중 5,000만 원(2014. 10. 12. 50만 원 제외)은 앞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50만 원은 그 규모,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수령금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송금액을 위 변제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부동산 관련 변제금액 (= 1억 2,500만 원)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F 명의 제2부동산을 원고에게 1억 8,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당시 기존 대출금채무 6,000만 원에 더하여 대환대출 시 7,000만 원을 원고가 추가로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총 1억 3,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실질 매매대금을 5,500만 원(= 1억 8,500만 원 - 약정 승계액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추가 대출금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2매매 관련 실제 매매잔금으로서 원고의 대여금 변제에 충당된 금액은 1억 2,500만 원(= 1억 8,500만 원 - 실제 승계액 6,000만 원)이다.

(2) 판단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게 F 명의 제2부동산을 1억 8,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5.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제2매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D, 근저당권자 U조합인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5. 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W조합인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여기에 더하여 위 인용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제2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여금 변제에 충당된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제2부동산의 실질 매매대금인 1억 2,500만 원(= 1억 8,500만 원 -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위 제2부동산의 선행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7,800만 원이고, 대출원금의 130%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확보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관행 등에 비추어, 위 선행근저당권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는 6,000만 원이었다고 보인다.

② 원고가 제2매매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5. 11. 17. 제2부동산을 소외 AF에게 2억 3,250만 원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인 1억 8,500만 원은 객관적인 가액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2부동산의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5,500만 원만을 그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채무를 승계 또는 대위변제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나(2022. 4. 4.자 준비서면 제3, 4쪽), 원고가 그 앞으로 대출받은 금원 중 위 선행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대출금 승계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위 대출금 중 일부가 피고에게 곧바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제3부동산 관련 변제금액 (= 8,300만 원)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F 명의 제3부동산을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당시 기존 대출금채무 1억 5,000만 원을 승계하고 등기이전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추가로 대출받는 3,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채무승계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피고는 실제로 위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수표 또는 현금 등으로 반환하였다. 따라서 제3매매 관련 실제 매매잔금으로서 원고의 대여금 변제에 충당된 금액은 1억 1,300만 원[= 2억 6,000만 원 + 등기비용 300만 원 - 실제 승계금액 1억 5,000만 원(= 피고가 지급받은 대출금 1억 8,000만 원 - 피고가 반환한 3,000만 원)]이다.

(나) 원고의 주장

제3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억 5,000만 원이고, 원고가 승계한 대출금액은 1억 8,000만 원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은 바 없으므로, 제3매매 관련 원고가 미지급한 실제 매매잔금으로서 원고의 대여금 변제에 충당된 금액은 7,300만 원(= 2억 5,000만 원 + 등기비용 300만 원 - 대출금채무 승계금액 1억 8,0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피고가 2015. 4. 3. 원고에게 F 명의 제3부동산을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4.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제3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F, 근저당권자 W조합,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갑 제20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22. W조합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은 F 명의의 대출금 계좌로 자동대체 방식으로 입금된 사실, 위 입금액 중 1억 5,000만 원은 F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3,000만 원은 F의 Z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제3매매 관련 등기비용 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실제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매매 관련 원고가 미지급한 매매잔금으로서 대여금 변제에 충당된 금액은 8,300만 원(= 2억 6,000만 원 + 등기비용 300만 원 - 대출금채무 승계금액 1억 8,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20호증, 을 제24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Z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5. 4. 22. 위 F의 Z은행계좌로 이체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위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F 명의의 대출금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위 3,000만 원이 원고에게 실제로 반환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그 앞으로 대환대출을 받아 증액된 대출액 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방법이 아니라 증액된 부분을 피고에게 다시 송금하였다가 다시 원고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반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1심에서 대출금채무 승계액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진 진실에 반하는 자백으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변제금액은 합계 757,642,295원[= ① 송금 관련 변제금액 472,173,832원(= 417,184,832원 + 54,989,000원) + ② 제1, 2, 3부동산 관련 변제금액 285,468,463원(= 제1부동산 77,468,463원 + 제2부동산 1억 2,500만 원 + 제3부동산 8,300만 원)]이다.

라. 미지급 대여금의 존부 및 청구의 당부

원고는 피고에게 754,504,990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757,642,295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3,137,305원(= 757,642,295원 - 754,504,99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3,137,305원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3,137,3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1. 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5. 11.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D 계좌와 관련된 미지급 대여금을 본소 청구취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D 계좌를 통한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손병원

판사김규화

판사박지원

별지